가공식품(농축수산물)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공식품(농축수산물)]

국민보건을 위하여 가공식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표시 및 원산지인증제도를 두고 있으며,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이력추적정보를 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제도, 식품의 원료관리에서부터 가공,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 및 평가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 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표준인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에는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원재료명, 유통기한, 식품첨가물, 주의사항, 그 외에 각종 영양표시, 나트륨 함량 표시, 유전자변형여부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유기가공식품도 표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농축수산물) 1
1. 가공식품 개관 4
1.1. "가공식품"이란? 4
1.1.1. 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 4
1.1.2. 가공식품의 유형 7
2. 안전한 가공식품 고르기 11
2.1. 원산지 확인하기 11
2.1.1. 원료의 원산지 표시제도 11
2.1.2. 원산지인증제도 13
2.1.3. 유통이력관리제도 15
2.2. 식품의 이력 확인하기 17
2.2.1.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17
2.2.2.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20
2.3. 인증제도 24
2.3.1.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24
2.3.2.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26
2.3.3.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KS) 30
3. 건강한 가공식품 고르기 35
3.1. 식품 등의 표시기준, 영양성분 등 확인하기 35
3.1.1. 식품 등의 표시 확인 35
3.1.2. 영양표시제도 37
3.1.3.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41
3.1.4.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43
3.2.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46
3.2.1.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46
3.2.2.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제도 50
4. 가공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53
4.1. 신고포상금 제도 53
4.1.1.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53
4.2. 분쟁해결 54
4.2.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54
4.2.2.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58
4.2.3. 소송을 통한 해결 60

1. 가공식품 개관

1.1. "가공식품"이란?

1.1.1. 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

가공식품의 의의

가공식품의 개념

▪ "가공식품"이란 ①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②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시키거나, ③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합니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3.42)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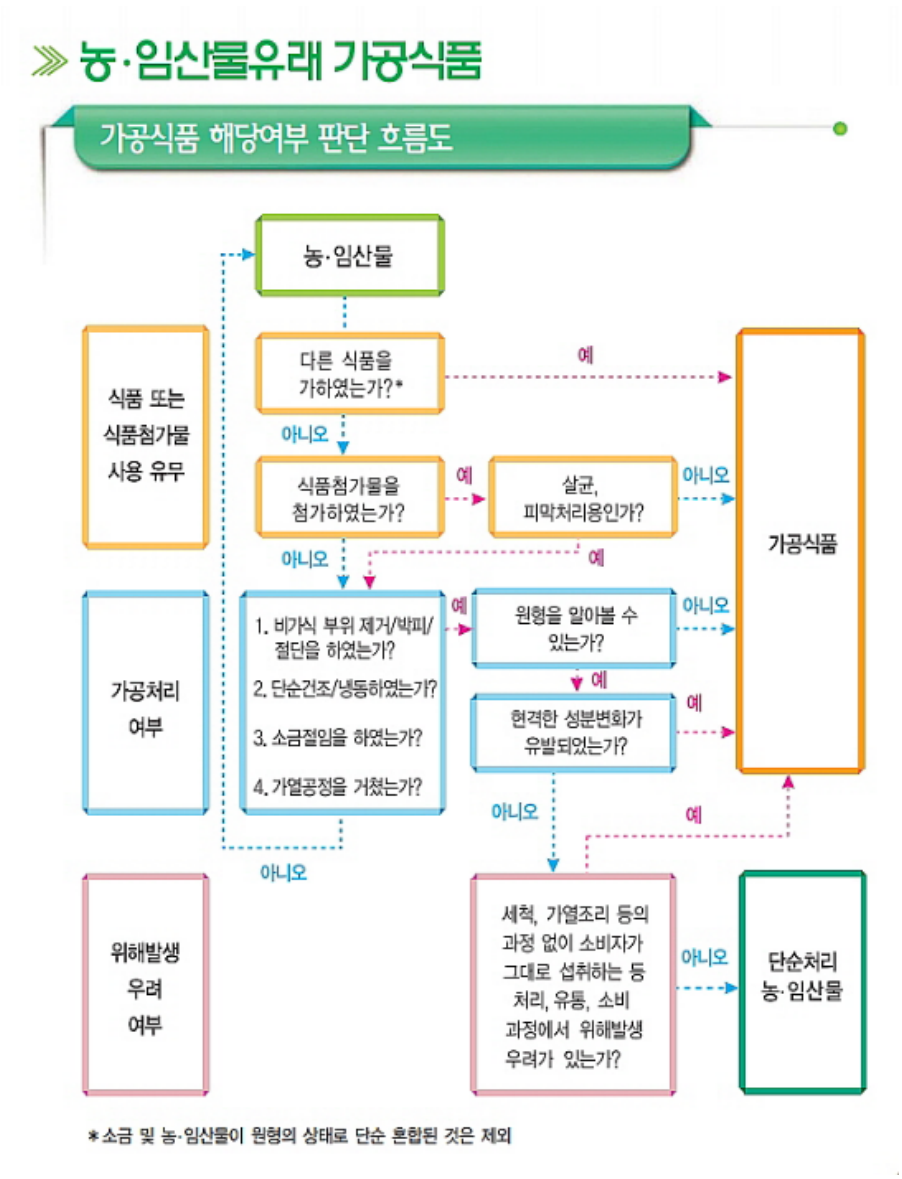
※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함)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제외합니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3.42) 단서).

> **※ 법령정보 제공범위**
>
> • 『가공식품(농축수산물)』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가공식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 1. 농산가공식품
> 2. 수산가공식품
> 3. 축산물가공품
>
> • 이 외의 가공식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임산물 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농·임산물 가공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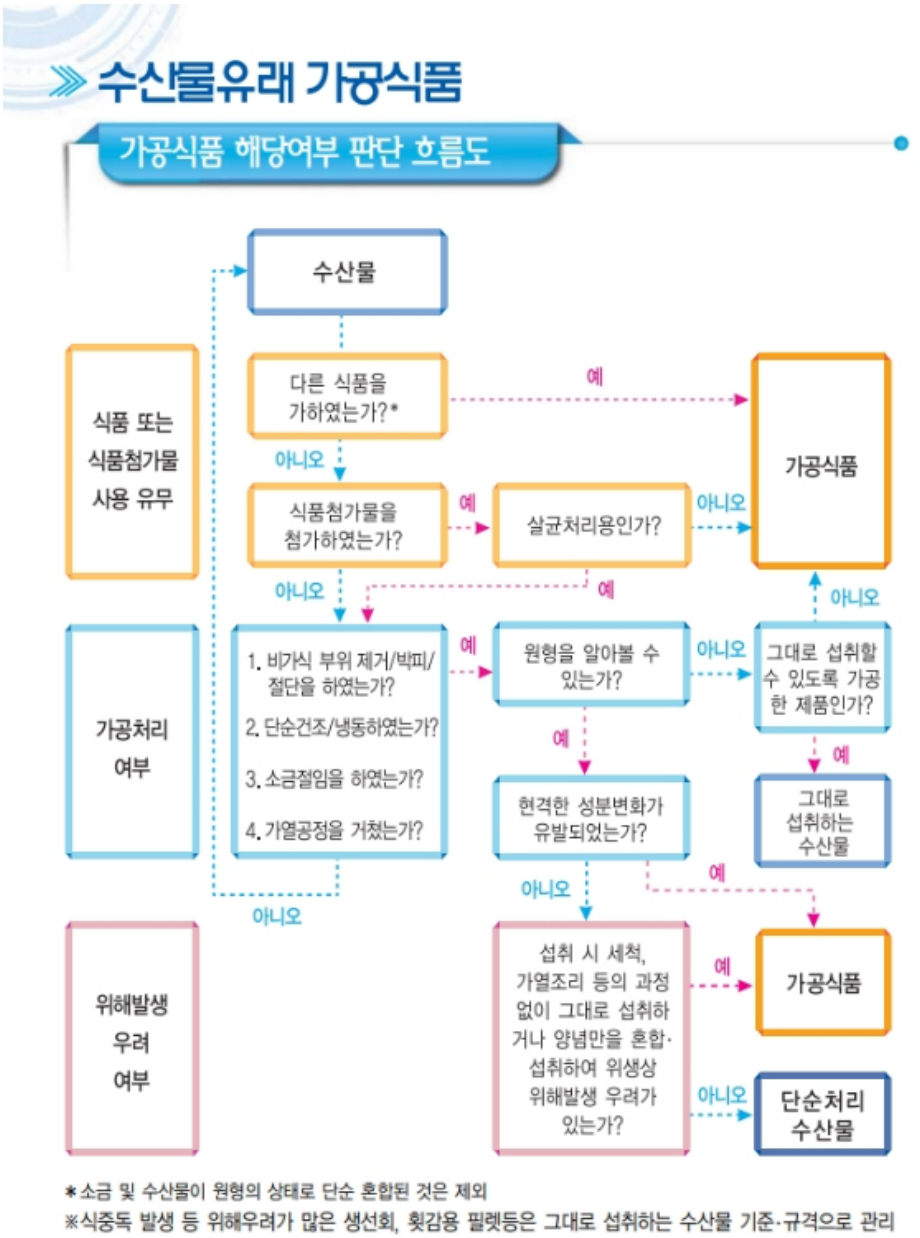
▪ 농·임산물유래 가공식품은 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첨가 유무, ② 가공처리 여부, ③ 위해발생우려 여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 매뉴얼」 p.2).



수산물 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수산물 가공식품

▪ 수산물유래 가공식품은 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첨가 유무, ② 가공처리 여부, ③ 위해발생우려 여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 매뉴얼」 p.7).



축산물가공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축산물가공품

▪ 축산물가공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분류	정의
식육가공품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식육간편조리세트(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손질된 농산물, 수산물 등을 함께 넣어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
유가공품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조제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무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알가공품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전란액,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피단

1.1.2. 가공식품의 유형

농산가공식품의 개념 및 유형

개념

▪ 농산가공식품이란 ① 농·임산물에 식품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가하였거나, ②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또는 현격한 성분변화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을 하였거나, ③ 섭취 시 세척, 가열조리 등의 과정 없이 바로 또는 양념만을 혼합하여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 매뉴얼」 p.3~p.5).

유형

▪ 농산가공식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16.).

분류	식품유형
전분류	전분질 원료를 사용하여 마쇄(磨碎), 사별(篩別),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
밀가루류	밀을 선별, 가수(加水), 분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 또는 이에 영양강화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땅콩 또는 견과류를 단순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땅콩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시리얼류	옥수수, 밀, 쌀 등의 곡류를 주원료로 하여 비타민류 및 무기질류 등 영양성분을 강화, 가공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채소, 과일, 견과류 등을 넣어 제조·가공한 것
찐쌀	벼를 익힌 후 건조하여 도정한 것이거나, 쌀을 익혀서 건조한 것
효소식품	식물성 원료에 식용미생물을 배양시켜 효소를 다량 함유하게 하거나 식품에서 효소함유부분을 추출한 것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
그 밖의 농산가공품류	과일, 채소, 곡류, 두류, 서류, 버섯 등 농산물을 가공한 것

※ 농산가공식품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1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산가공식품의 개념 및 유형

개념

▪ 수산가공식품이란 ① 수산물에 식품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가하였거나, ②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또는 현격한 성분변화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을 하였거나, ③ 여러 가공 공정을 거쳐 위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섭취 시 세척, 가열조리 등의 과정 없이 바로 또는 양념만을 혼합하여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 매뉴얼」 p.8~p.10).

유형

▪ 수산가공식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20.).

분류	식품유형
어육가공품류	어육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어육소시지 등
젓갈류	어류, 갑각류, 연체류, 극피류 등에 식염을 가하여 발효 숙성한 것 또는 이를 분리한 여액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건포류	어류, 연체류 등의 수산물을 건조한 것이거나 이를 조미 등으로 가공한 조미건어포, 건어포 등
가공김 (조미김 또는 구운김)	마른김(얼구운김 포함)을 굽거나, 식용유지, 조미료, 식염 등으로 가공한 것
한천	우무를 동결탈수하거나 압착 탈수하여 건조시킨 식품
그 밖의 수산물가공품	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

※ 수산가공식품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2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가공품의 개념 및 유형

개념

▪ “축산물가공품”은 식육가공품·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을 말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3호 참조).

유형

▪ 축산물가공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분류	식품유형
식육가공품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식육간편조리세트(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손질된 농산물, 수산물 등을 함께 넣어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
유가공품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조제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무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알가공품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전란액,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피단

※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17.~1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안전한 가공식품 고르기

2.1. 원산지 확인하기

2.1.1. 원료의 원산지 표시제도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제도

개념

▪ 농산물·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는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원산지 표시대상

▪ 다음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① 농수산물 또는 ②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 ③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함)의 원료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2.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다만,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은 제외함)

▪ 위 ③의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酒精)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1.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가.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

   나.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

   다. 위 가. 및 나. 외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의 원료

   라. 위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및 절임류(소금으로 절이는 절임류에 한정함)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원료

   1) 김치류 중 고춧가루(고춧가루가 포함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고춧가루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 및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및 소금

   2)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3) 절임류는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다만,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와 소금으로 함)

2. 위 1.에 따른 표시대상 원료로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원료

※ 위 규정을 적용할 때 원료(가공품의 원료를 포함함)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원료 농수산물이 같은 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원료 농수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한 원산지 표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함)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
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원재료명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대상이 아닌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따른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참조).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표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5.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6.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7. 다른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 ※ 원산지 표시기준, 방법 및 위반시 제재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반찬가게 창업·운영』의 <준수사항-원산지 표시의무-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리적 표시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농축수산물 소비자』의 <안전한 농산물 고르기-인증제도-농산물 지리적 표시>와 <안전한 수산물 고르기-인증제도-수산물 지리적 표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지리적 표시제도와의 구별**
>
> 지리적 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이나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

2.1.2. 원산지인증제도

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제도

의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

▪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수산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인증대상

▪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중 원산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원산지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인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제출서류(공통)	▪ 최근 1년간 해당 가공식품 품목 구매·조달 실적 서류 ▪ 해당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원재료 또는 식재료가 가공식품인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말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축산가공식품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신청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원산지인증 신청 품목의 제조보고서 사본
수산가공식품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신청서(「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원산지인증 표시

가공식품의 인증표시

▪ 원산지인증을 받은 농·축산가공식품 사업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다음의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부착해야 합니다(「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별표 7).

가공식품 사업자		
원산지인증 표지		
원산지인증 현판		

▪ 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산가공식품 사업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다음의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부착하거나 인쇄해야 합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및 별표 9).

가공식품 사업자		
원산지인증 표지		
원산지인증 현판		

※ 위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5호의2).

위반 시 제재

인증의 부정취득 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인증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산업진흥법」 제36조제1항제1호의3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3호)

표시관련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산업진흥법」 제3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에 원산지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오인의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 포함)를 하는 행위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에 원산지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원산지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광고관련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산업진흥법」 제36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 제10호).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을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을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2.1.3. 유통이력관리제도

수입 농산물 가공품 유통이력관리제도

"유통이력관리제도"란?

▪ "유통이력"이란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수입 이후부터 소비자 판매 이전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말하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이력을 관리하는 것이 “유통이력관리제도”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 이유 참조).

▪ 유통이력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

- 양수자의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양도 물품의 명칭·수량·중량
- 양도일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통이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지정기준 및 신고대상

▪ 유통이력관리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중에서 사전에 유통이력관리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된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을 말합니다(「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별표 1).

- 관계 전문기관 등에 의해 위해성이 입증된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 외국에서 위해성이 입증되어 수입 후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 비식용 등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후 식용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 수입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 및 생산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 그 밖에 사회안전·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시급하게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분류		지정기간
• 양파(신선·냉장) 껍질을 벗긴 것 • 양파(신선·냉장) 기타 • 도라지 • 도라지(건조) • 김치 • 고추(냉동) • 고추(건조) • 팥 • 콩(대두) • 땅콩(꼬투리를 벗긴 것) • 땅콩 조제품 • 참깨분 • 볶은 참깨분 • 황기(식품용) • 당귀(식품용)	• 지황(식품용) • 작약(식품용) • 마늘(냉동) • 마늘(신선·냉장) 껍질을 벗긴 것 • 마늘(신선·냉장) 기타 • 표고버섯(신선·냉장) • 표고버섯(건조) • 대추(냉동) • 대추(건조) • 생강(건조) • 생강(건조) 파쇄 또는 분쇄 • 생강(신선·냉장) • 대파(신선·냉장) • 산양삼 • 천연꿀	2024. 8. 27. ~ 2027. 7. 31.
• 양파(냉동) • 녹두(건조) • 고사리(냉동) • 고사리(건조)	• 당근 • 대파(냉동) • 대파(건조)	2024. 1. 1. ~ 2026. 12. 31.

※ 수입통관 후 재포장·분할포장·단순가공을 거쳐 원산지 표시의무가 부여되는 유통이력관리 신고대상인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도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자가 사용목적·휴대반입·수출 후 재수입 농산물 등은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참조).

신고방법 및 절차

▪ 농산물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와 이를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는 공정거래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의 유통이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 신고는 유통이력관리 신고대상인 수입 농산물가공품의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유통이력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 제6조의2제1항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 전자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의 기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 제6조제2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유통이력관리 신고대상인 수입 농산물 가공식품을 양도하는 경우(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 포함)에는 양수자에게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거래명세서 또는 수입신고필증(전자문서 포함)에 명시하거나 신고의무 통지서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

> ※유통이력 신고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부터 적용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8525호, 2021. 11. 30.> 제2조).

유통이력 신고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 유통이력 신고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유통이력관리 신고대상인 수입 농산물 가공식품을 수거 또는 조사하거나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1항).

▪ 이 경우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수거·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2항).

위반 시 제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 유통이력관리 신고대상인 수입 농산물 가공식품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하는 자에게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

- 관계 공무원의 수거·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2항)

2.2. 식품의 이력 확인하기

2.2.1.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가공식품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의의

▪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식품위생법」 제2조제13호).

등록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함으로써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9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의2).

대상	임의대상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
	의무대상	영유아식 제조·가공업자, 일정 매출액·매장면적 이상의 식품판매업자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

※ 세부적인 등록대상 및 대상자별 의무적용시기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무등록 대상자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5호의2 및 제97조제1호).

등록사항

▪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0조).

국내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의 경우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제품명과 식품의 유형	제품명
소비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원산지(국가명)
보존 및 보관방법	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

표시사항

▪ 등록자는 최소판매단위별 또는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7조제1항).

※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의 부여기준 및 표시방법은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7조 및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는 다음의 표시를 통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식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9조제4항,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6조 및 별표 4).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지	 ※제품 및 업소 현판 등의 크기, 포장·재질,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색상 및 크기 조정 가능

이력추적관리정보의 확인

▪ 소비자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음의 이력추적관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9조제1항).

국내식품의 경우	•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 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제조일자 •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제품 원재료 관련 정보(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원산지, 유전자변형식품여부) •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만 해당) • 출고일자 •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수입식품 등의 경우	•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 • 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제조국 • 제조회사 명칭 및 소재지 • 유전자변형식품표시 • 제조일자 •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수입일자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만 해당) • 회수 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금지사항

▪ 누구든지 식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가목).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항)

위반 시 제재

▪ 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호, 제16조제3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호).

행정처분	벌칙
시정명령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해당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명령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품목 등의 제조정지	

2.2.2.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의의

▪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을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축산물가공품의 이력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3호).

등록대상

▪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4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축산물가공품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3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8호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5).

대상	임의대상	· 축산물가공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
	의무대상	· 조제유류를 가공하는 자 중 매출액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조제유류를 판매하는 자로서 매장면적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세부적인 등록대상 및 대상자별 의무적용시기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무등록 대상자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45조제4항제14호).

등록사항

▪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6).

국내 축산물가공품	수입 축산물가공품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제품명 및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제품명
소비기한	원산지(국가명)
보존 및 보관방법	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

표시사항

▪ 등록자는 최소판매단위별 또는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7조제1항).

※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번호의 부여기준 및 표시방법은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7조 및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는 다음의 표시를 통하여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4제2항 및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6조 및 별표 4).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표지	 ※ 제품 및 업소 현판 등의 크기, 포장·재질,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색상 및 크기 조정 가능

※ 의무등록 대상자가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4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2항제10호의2).

이력추적관리정보의 확인

▪ 소비자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음의 이력추적관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9조제1항).

국내식품의 경우	•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 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제조일자 •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제품 원재료 관련 정보(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원산지, 유전자변형식품여부) •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만 해당) • 출고일자 •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수입식품 등의 경우	•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 • 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제조국 • 제조회사 명칭 및 소재지 • 유전자변형식품표시 • 제조일자 •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수입일자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만 해당) • 회수 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표시훼손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여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4제3항 및 제47조제2항제10호의3).

이력추적관리의 허위 표시 등의 금지

금지사항

▪ 누구든지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다목).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항)

위반 시 제재

▪ 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호, 제16조제3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호).

행정처분	벌칙
• 시정명령 • 해당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명령 •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품목 등의 제조정지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 농축수산물 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농축수산물 소비자』의 <안전한 농산물 고르기-원산지 및 생산자 표시-농산물 이력추적제도>와 <안전한 수산물 고르기-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수산물 이력추적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축수산물의 이력은 <농식품정보누리>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3. 인증제도

2.3.1.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HACCP)"란?

의의

▪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이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선별·처리·포장·소분·보관·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조제1호 참조).

적용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정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대상식품	
1.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어육소시지	9.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2.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10.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숙면·건면
3.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11. 특수영양식품
4.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캔디류·빵류·떡류	12. 특수의료용도식품
5. 빙과류 중 빙과	13.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6.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는 제외함]	14.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7. 레토르트식품	15.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8.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않은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만 해당)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준 표시

▪ HACCP 적용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식품에 HACCP 적용식품 표시를 하거나 또는 HACCP 적용업소 인증사실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 8).

▹ HACCP 인증표시

1. 기본인증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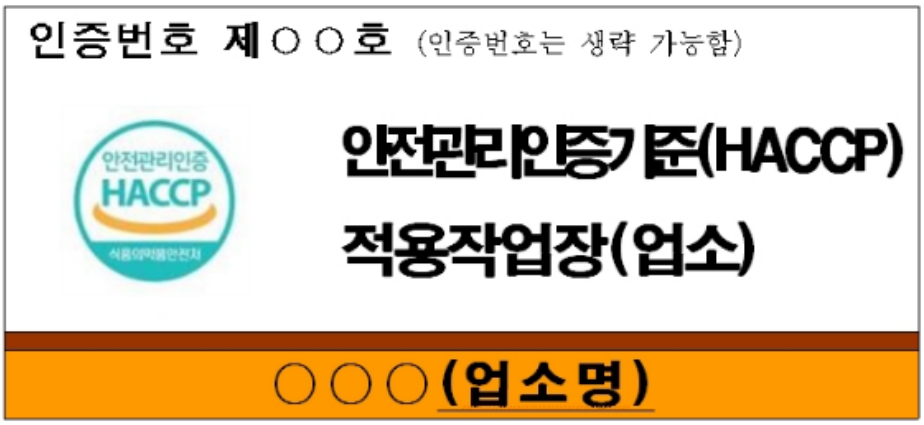
2. 다양한 인증표시 예시



※제품 및 업소의 특성과 포장 재질·디자인에 따라 다양한 색상과 크기 적용 가능

<출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주요 사업-해썹(HACCP)인증--인증마크>

▹ HACCP 적용작업장 및 업소 현판 견본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6호).

유효기간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원래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입니다(「식품위생법」 제48조의2제1항).

조사 및 평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식품위생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8조의3제1항).

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의 취소 등	인증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식품위생법」 제48조제8항)
허가취소 등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명령(「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5호)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 ※ 식품안전관리인증업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3.2.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HACCP)"란?

의의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이란 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선별·처리·포장·소분·보관·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섞이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조제1호 참조).

적용대상

의무대상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 도축업의 영업자 ▪ 집유업의 영업자 ※ 울릉도 및 백령도 지역에 있는 영업자 제외
	안전관리인증기준	▪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 유가공업의 영업자 ▪ 알가공업의 영업자 ▪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임의대상		▪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받기를 원하는 자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제3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항

유효기간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원래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입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2제1항).

▪ 기존에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던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작업장으로서 이후 안전관리인증 의무화 대상으로 편입된 작업장은 2021년 10월 7일까지 HACCP 인증 유지가 가능하지만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기한 내에 HACCP 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부칙<제17249호, 2020. 4. 7.> 제3조제1항].

▪ 이 경우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 인증의 유효기간은 2020년 10월 8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는 날이 3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4년, 2년 이상 3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에는 5년, 2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에는 6년으로 봅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부칙<제17249호, 2020. 4. 7.> 제3조제2항].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가공·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통합하여 인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5항 전단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대상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 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50억원 이상인 축산물가공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 이 경우 해당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각각 인증받은 것으로 봅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5항 후단).

인증기준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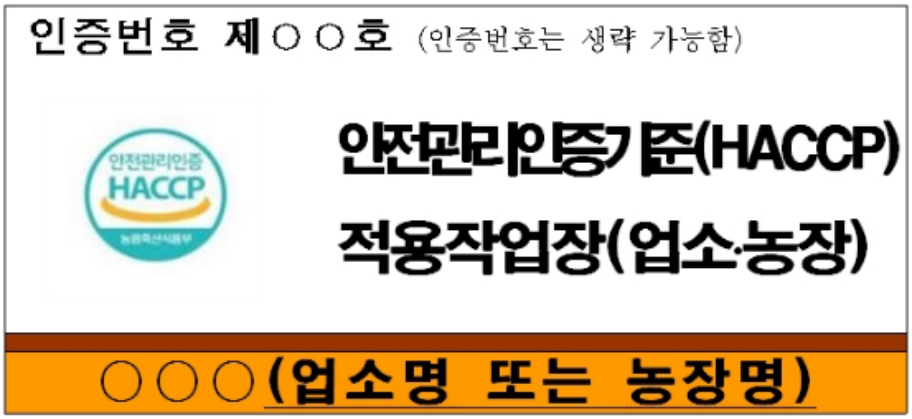
▪ HACCP 적용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식품에 HACCP 적용식품 표시를 하거나 또는 HACCP 적용업소 인증사실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 8).

▸ HACCP 인증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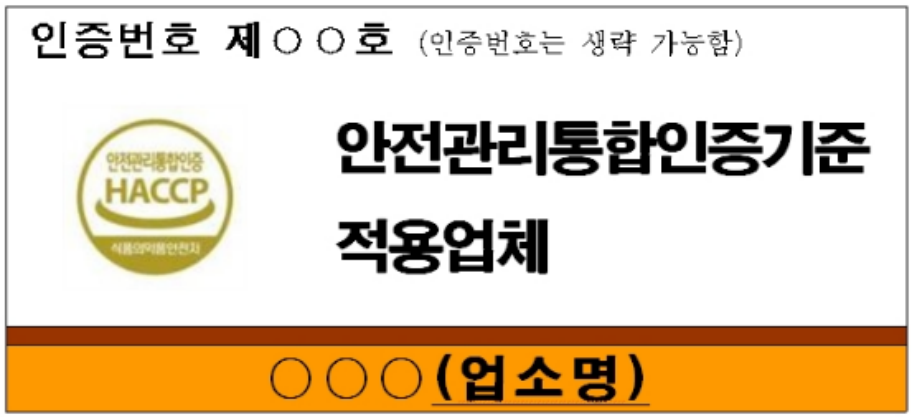
1. 도축장, 집유장, 농장	
	
2.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 현판 견본

1. 도축장, 집유장, 농장



2.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 증명서류를 발급받지 않은 자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라 함)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9항).

조사 및 평가

▪ 안전관리인증 기준 또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는 영업자는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 및 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받아야 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

▪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가 총점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위에 따른 조사·평가를 면제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3제3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제6항).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는 영업자의 경우에도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3제4항).

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지 않거나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의 취소 등	인증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제2호)
허가취소 등	영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명령(「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과징금·과태료 처분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8조제1항)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제1항제5호)
위반사실 공표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축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제4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음의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제4항제4호의2)

▪ 또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지 않으면서 작성·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인증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업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3.3.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KS)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

▪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수산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가공식품의 산업표준화란?

▪ 가공식품 표준화(KS)란 합리적인 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표준을 제정·보급함으로써 가공 식품의 품질고도화 및 관련 서비스의 향상, 생산기술 혁신을 기하여 거래의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식품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한국식품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대상품목

▪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에는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이 해당됩니다(「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 가공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은 산업표준인증기관이 실시하며, 산업표준인증의 기준·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릅니다(「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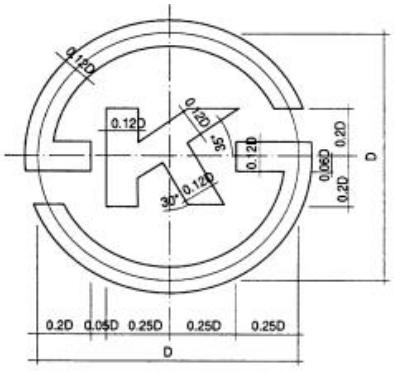
표시사항

▪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포장·용기·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2항).

▪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본문).

표시사항
▪ 한국산업표준의 명칭 및 번호
▪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 인증번호
▪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의 제조일(제품인증표시에만 해당함)
▪ 인증받은 자의 업체명, 사업자명 또는 그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 인증기관명
▪ 한국산업표준을 표시하는 도표
▪ 한국산업표준에서 제품의 품목 또는 서비스의 분야별 특성에 따라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

▪ 해당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표시하는 KS인증마크의 규격은 다음과 같으며, 도표구성선은 모두 한 가지 색으로 하되 색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별표3).

한국산업표준 표시	

▪ 인증받은 자는 공장과 서비스 사업장에 각각 다음과 같은 표시판을 내걸어 홍보할 수 있습니다(「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별표 6 및 별표 7).





사후관리

▪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산업표준화법」 제19조제1항·제2항·제5항, 제20조제1항 및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항).

정기심사 등	정기심사	가공식품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매년 또는 3년마다 받아야 함
	이전심사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완료일부터 45일 이내에 받아야 함
조사	시판품조사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함
	현장조사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을 조사함

위반 시 제재

인증의 부정취득 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산업진흥법」 제36조제1항제1호의3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3호)

표시관련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산업진흥법」 제3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산업표준화법」 제42조제1호, 제2호).

-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에 산업표준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오인의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 포함)를 하는 행위
-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식품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식품에 산업표준인증을 받지 않는 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산업표준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광고관련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산업진흥법」 제36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 제10호).

-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을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식품을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인증기준 관련

▪ 인증기준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개선명령	정기심사·이전심사의 실시 또는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등에 따른 결과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산업표준화법」 제21조제1항 전단).
인증표시의 제거	
6개월 이내 인증표시의 정지	
판매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품수거 명령	개선명령,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산업표준화법」 제21조제2항)
인증의 취소 (「산업표준화법」 제22조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3. 정기심사, 이전심사, 시판품조사·현장조사 결과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않는 경우 4.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표준화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러한 제재로서의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판매정지 및 제품수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표준화법」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42조제3호).

▪ 또한 인증이 취소됐음에도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않고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보관 또는 운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표준화법」 제22조제4항 및 제42조제4호).

▪ 소비자단체의 요구 또는 인증제품·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되는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표준화법」 제20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제1호).

3. 건강한 가공식품 고르기

3.1. 식품 등의 표시기준, 영양성분 등 확인하기

3.1.1. 식품 등의 표시 확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 등의 표시

▪ 가공식품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 성분명 및 함량
- 용기·포장의 재질
-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 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

※ 다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 가공식품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것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되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우유류(냉장 보관하는 제품만 해당)에 대해서는 2031년 1월 1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부칙<제18445호, 2021. 8. 17.> 제2조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제1813호, 2022. 6. 30.> 제2조제2항].

표시방법

▪ 위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릅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등의 판매금지 등

▪ 위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위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함]·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1호·제3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7조제1호 및 제28조제1호).

행정처분	벌칙
.시정명령 .해당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명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품목 등의 제조정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금지사항

▪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제2호).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항)

위반 시 제재

▪ 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호·제3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호).

행정처분	벌칙
.시정명령 .해당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명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엉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품목 등의 제조정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3.1.2. 영양표시제도

영양표시제도란?

의의

▪ "영양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量)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대상품목

▪ 2022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한 다음의 시행일부터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양표시를 해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 4 및 부칙<제2004호, 2024. 12. 30.> 제1조제2호).

-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영업소: 2026년 1월 1일
-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영업소: 2028년 1월 1일

영양표시 대상식품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캔디류, 빵류 및 떡류	조미식품: 식초류(발효식초만 해당), 소스류, 카레(커리),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향신료조제품만 해당)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및 빙과	절임류 또는 조림류: 김치류(김치는 배추김치만 해당), 절임류 및 조림류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농산가공식품류
당류	식육가공품류: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간편조리세트 및 식육함유가공품
잼류	알가공품류
두부류 또는 묵류	유가공품류
식용유지류	수산가공식품류
면류	동물성가공식품류: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기타 동물성가공식품만 해당), 곤충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및 추출가공식품
음료류: 다류(액상차, 고형차만 해당), 커피(액상커피, 조제커피만 해당),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및 기타음료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특수영양식품	즉석식품류
특수의료용도식품	기타식품류
장류: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및 기타장류	건강기능식품
위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및 축산물로서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및 축산물(주류에 열량만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	

▪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표 4).

영양표시 대상 제외식품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추잉껌	향신료가공품: 천연향신료
얼음류	식염
다류: 침출차	김치류: 김치(배추김치는 제외)
커피(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커피원두에 향료만을 첨가한 조제커피만 해당)	주류
장류: 한식메주, 한식된장	포장육
식초류: 희석초산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식육 및 알류	

표시사항

▪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본문).

표시 대상 영양성분	
열량	트랜스지방(Trans Fat)
나트륨	포화지방(Saturated Fat)
탄수화물	콜레스테롤(Cholesterol)
당류(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單糖類)와 이당류(二糖類)를 말함. 다만, 캡슐·정제·환·분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제외)	단백질
지방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영양성분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단서).

구분	표시 생략 대상 영양성분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를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등의 경우	·탄수화물 ·지방 ·트랜스지방(해당 영양성분이 없는 경우만 가능)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위반 시 제재

▪ 영양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및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제14조제1호, 제16조제1항제1호·제3항제1호 및 제31조제1항제1호).

행정처분	벌칙
.시정명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금지사항

▪ 누구든지 영양성분 표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항)

위반 시 제재

▪ 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호·제3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20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호).

행정처분	벌칙
.시정명령 .해당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명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품목 등의 제조정지 .해당 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3.1.3.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다음의 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면류 중 유탕면(기름에 튀긴 면), 국수 또는 냉면
- 즉석섭취식품(동·식물성 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가열 또는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함) 중 햄버거 및 샌드위치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표시사항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이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거나 QR코드 등과 연계하여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제5조 및 별표 2).

나트륨 함량 구간	<table><tr><td>구간</td><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r><tr><td>함량 (mg)</td><td>0 ≤ ≤ 800</td><td>800 < ≤ 1,000</td><td>1,000 < ≤ 1,200</td><td>1,200 < ≤ 1,400</td><td>1,400 < ≤ 1,800</td><td>1,600 < ≤ 1,800</td><td>1,800 < ≤ 2,000</td><td>2,000 <</td></tr></table>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방법	 ※ 다만, 나트륨 함량이 2000mg을 초과하여 8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트륨 함량이 해당하는 구간을 적색으로 표시해야 합니다(「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별표 2 제2호). 
QR 코드 예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방법에 관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단위 및 도안 등의 표시기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해서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별표 1 및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및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호, 제16조제1항제1호·제3항제1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

- 시정명령
-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1.4.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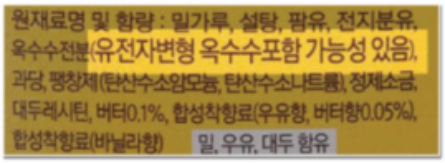
▪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과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 등"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한정합니다(「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

표시사항

▪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는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또는 "유전자변형 XX포함 식품", "유전자변형 XX포함 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 XX포함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변형된 XX"로 표시해야 합니다(「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5조제6호).

▪ 유전자변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 XX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해당 제품의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 XX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5조제7호).

	표시방법 예시
'유전자변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블로그 참조>

※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위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2항).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해식품 등의 회수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데 필요한 조치(「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폐기처분	해당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한 위해방지조치 명령(「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허가취소 등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명령(「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호)
품목 제조정지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 명령(「식품위생법」 제76조제1항제3호의2)
과징금·과태료 처분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식품위생법」 제82조제1항)** **※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위반사실 공표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식품위생법」 제84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8조)

▪ 또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금지사항

▪ 누구든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항)

위반 시 제재

- 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호·제3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호).

행정처분	벌칙
시정명령 해당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명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품목 등의 제조정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3.2.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3.2.1.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란?

의의

- “유기식품”이란 식품(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과 수산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축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말하며, “유기가공식품”이란 유기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 및 수산식품을 말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공인받은 인증기관이 원재료와 가공과정 등을 심사하여, 그 관리체계가 유기 인증기준에 부합하면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증하고, 인증 받은 제품만 인증로고와 유기(농)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2018 유기가공식품 질의·응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8, p.3].

인증품목

-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구체적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5조제3호 및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4조제2호).

구분	대상품목
농축산물을 원료로 한 유기가공식품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신고한 가공식품으로, 인증기준에 따라 제조·가공한 것
수산물을 원료로 한 유기가공식품	유기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하는 식품

인증표시

▪ 인증사업자는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이하 "포장 등"이라 함)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전단).

▪ 유기가공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문자 및 표시도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별표 6,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5).

구분	표시문자	표시도형
인증표시	• 유기가공식품, 유기농 또는 유기식품 • 유기농◎◎ 또는 유기◎◎	유기 (ORGANIC) 농림축산식품부 인증번호: / ORGANIC MAFRA KOREA Certification Number:
	• 유기식품 또는 유기가공식품 • 유기◎◎	유기식품 (ORGANIC) 해양수산부 인증번호: / ORGANIC MOF KOREA Certificate Number:
다양한 표시도형의 예시		유기가공식품 (ORGANIC) 농림축산식품부 (×3)
※ 표시도형 내부의 '유기농'은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색상은 녹색, 파랑색, 빨강색 또는 검정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유기가공식품 질의·응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8, p.8].		

▪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용기·포장에 표시하는 구체적 예시 및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표시하는 구체적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별표 7,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전단, 별표 6,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 4).

<table>
<tr><td rowspan="2">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용기
(예시)</td><td>생산,
제조·
가공자의
표시
(예시)</td><td>
<table>
<tr><td colspan="2">인증품의 표시사항</td></tr>
<tr><td></td><td>생산자 : **작목반(김**)
품목 : 유기재배 딸기
생산지 : 경북 김천시
포장장소 : 경북 김천시 용전로 ***
전화번호 : ***-****-****</td></tr>
<tr><td colspan="2">인증번호 : ********
</td></tr>
</table>
</td></tr>
<tr><td>취급자의
표시
(예시)</td><td>
<table>
<tr><td colspan="2">인증품의 표시사항</td></tr>
<tr><td></td><td>취급자 : *** 포장센터
품목 : 유기재배 딸기
생산지 : 경북 김천시
포장장소 : 경북 김천시 용전로 ***
전화번호 : ***-****-****</td></tr>
<tr><td colspan="2">인증번호 : ********</td></tr>
<tr><td colspan="2">생산자
인증번호 : ********
 </td></tr>
</table>
</td></tr>
</table>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 (예시)	

거래명세서

공급받는자			공급자		
	등록번호	***-**-*****		등록번호	***-**-*****
	업체명	**친환경유통		업체명	**친환경작목반 (인)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사업장 주소	경북 김천시 용전로 ***		포장장소	경북 김천시 용전로 ***

거래일자	품목	규격	수량	인증번호	인증종류
2013.6.2	유기농 배추	포기	100	********	유기농

▪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후단).

위반 시 제재

▪ 위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4항제3호).

▪ 또한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인증표시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제1호).

> **※ 제한적 유기표시 제도**
>
>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면서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의 경우 원재료 70% 이상이 유기농축산물이거나,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을 사용했다면 사용한 유기농수산물의 함량에 따라 백분율 등으로 제한적 유기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별표 8,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표 7).

유효기간

▪ 유기가공식품 등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인증 등에 대한 부정행위의 금지

표시·광고 관련 금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7호 및 제8호).

-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하는 행위
-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또는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표시·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제5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 ※ 유기가공식품 인증정보는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2.2.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제도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제도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제도"란?

▪ "동등성 인정"이란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여 국내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해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 인증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인정품목

▪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동등성 인정을 신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표시방법

▪ 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는 유기가공식품의 표시방법을 따릅니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31조,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5조).

▪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유럽연합과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동등성 인정 협정에 따라 수입된 유기가공식품은 양국의 로고를 함께 또는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 동등성 인정 협정국의 표시도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등성 인정 협정국의 인증 도형		
		

※ 유기가공식품의 인증표시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가공식품(농축수산물)』의 <건강한 가공식품 고르기-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현황 및 협정문 등 이와 관련된 자료는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 유기식품 신고제도

"수입 유기식품 신고제도"란?

▪ 유기표시가 된 인증품 또는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의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 인증품인 유기식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인증서 사본 및 인증기관이 발행한 거래인증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함)
-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사본 및 수입증명서(Import Certificate)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함)

적합성검사 및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

▪ 수입신고된 유기식품은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유기식품의 인증 및 표시기준 적합성을 조사받게 되며, 적합판정을 받으면 해당 제품의 수입신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기식품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 수입 유기식품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제1호).

※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 신고제도

- "비식용유기가공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해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제조·가공·취급되는 가공품(「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용기·포장,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을 말하며,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 신고 대상은 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호).

- 유기표시가 된 인증품인 비식용유기가공품을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제품의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수입 품목, 수량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참조).

※ 그 밖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제도 및 수입 유기식품 신고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2018 유기가공식품 질의·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가공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4.1. 신고포상금 제도

4.1.1.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도

부정·불량식품 신고방법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구분	신고방법
전화신고	국번없이 1399
홈페이지 접속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그 밖의 방법	우편, 엽서, FAX 등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되며,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 피신고인(업소)의 업소명칭(성명),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행위 등 신고 내용을 반드시 기재

> ※ 부정·불량식품의 대표적 유형은 이 사이트 『불량식품』의 <불량식품을 구별하고 싶어요-무엇을 불량식품이라고 하나요?-이런 것을 불량식품이라 해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의 지급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0조제1항).

> ※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은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별표 1 및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의 지급기준

▪ 신고자가 동일 업소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식품위생법」 제90조 및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포상금의 지급한도

▪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은 식품별로 각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지급 기관별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 각 50만원, 시·도 당 각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본문).

▪ 다만, 신고사항이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1호 및 별표 2 제3호가목에 해당되는 행위일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단서).

포상금의 지급방법

▪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사항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 본문).

▪ 다만, 「식품위생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일시적으로 판매 등을 금지 조치한 사항을 300㎡ 미만 식품판매자가 불이행한 경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여부만을 확인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 단서).

포상금 지급의 예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단서).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사업자와 피해보상 등이 합의된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위생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율지도원과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 이미 신고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 신고대상이 된 업체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전통시장과 길거리 등에서 생계형 영세업체의 식품 조리·소분·즉석제조·가공 판매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 농업인이 자신이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가공·조리해 판매하는 것을 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무허가·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 자가소비용으로 구입 후 사용 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다 무표시 제품 판매나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된 경우
- 허위·과대광고, 표시기준, 영업장 면적 임의변경 및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경과 후 신고한 경우

4.2. 분쟁해결

4.2.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으며,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품목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대상이 되는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1 Ⅰ. 제1호·제2호).

품종	해당품목
란류	계란, 메추리알 등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곡류	쌀, 보리, 콩, 조, 수수, 팥, 밀, 참깨, 땅콩 등
과일	배, 사과, 복숭아, 토마토, 수박, 참외, 포도, 감, 바나나, 파인애플
야채류	무, 배추, 당근, 오이, 가지, 파, 마늘, 감귤, 자두, 대추, 양배추, 양파, 고추, 호박, 상추, 시금치 등
수산물류	생선류, 조개류, 해조류, 건어물류 등
청량음료	콜라, 사이다, 환타, 유산균음료, 두유, 넥타류, 쥬스류, 드링크류, 보리음료 등
과자류	초콜릿, 건과자, 비스킷, 미과, 스낵류, 껌, 캐러멜, 알사탕 등
빙과류	아이스크림, 빙과, 유사냉동디저트 등
낙농제품류	우유, 분유, 연유, 발효유, 버터, 치즈, 이유식 등
통조림류	과실, 해산물, 육류통조림 등
제빵류	식빵, 파이, 떡, 빵, 찹쌀떡, 카스테라 등
설탕·제분류	정당, 물엿, 밀가루, 콩가루, 전분 등
식용유류	참기름, 대두유, 옥배유, 낙화생유, 채종유, 쇼트닝유, 면실유, 팜유, 마가린 등
고기가공식품류	햄, 소시지, 베이컨, 어육연제품 등

조미료	마요네즈, 케첩, 카레, 화학조미료, 식초, 소금, 고추분, 후추분, 겨자 등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 춘장, 소스 등
다류	커피, 홍차, 율무차, 녹차, 쌍화차, 구기자차, 칡차, 생강차, 계피차 등
면류	국수, 라면, 당면, 냉면, 인스턴트면류 등
자양식품	인삼, 꿀, 개소주, 영지버섯, 알로에, 화분 등
주류	탁주, 소주, 청주, 맥주, 과실주, 양주 등
도시락	도시락
찬류	두부, 연두부, 묵, 단무지, 김치, 젓갈류 등
냉동식품류	햄버거, 돈가스, 새우, 만두 등
먹는샘물	먹는 샘물

▪ 위의 식품들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시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Ⅰ. 제1호·제2호).

품종	분쟁유형	해결기준
란류 육류 곡류 과일 야채류 수산물류	1)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위	해당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패, 변질	
	3) 소비기한 경과	
	4) 이물혼입	
	5)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청량음료 과자류 빙과류 낙농제품류 통조림류 제빵류 설탕·제분류 식용유류 고기가공식품류 조미료 장류 다류 면류 자양식품 주류 도시락 찬류 냉동식품류 먹는샘물	1) 함량, 용량부족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패, 변질	
	3) 소비기한 경과	
	4) 이물혼입	
	5)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Ⅰ. 제2호 비고 참조).

▪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이 위의 식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해서 적용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 그 밖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 <직접해결-일반적 해결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2.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의 담당업무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으로서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3조 및 제35조).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는 소비자상담, 피해구제(합의권고), 분쟁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비자상담

▪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사용(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을 통해 상담·정보제공 등 소비자불만을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 신청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담신청방법
인터넷 상담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www.ccn.go.kr) 인터넷상담
전화 상담	국번없이 1372
방문 상담	한국소비자원 본원 및 서울지원 방문
외국인 상담	☎ 043-880-5400
해외직구 피해관련상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s://crossborder.kca.go.kr/home/main.do)로 접속하여 확인('25.12.31.까지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상담 신청한 내역에 한하여 조회 가능)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및 http://www.ccn.go.kr)로 신청
소비자상담 절차 안내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합의권고)

▪ 소비자상담 단계에서 소비자의 불편 및 피해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또는 피해처리) 단계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피해구제 신청 및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	피해구제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신청 웹사이트 방문 (https://www.kca.go.kr/odr/pg/pr/aiCnSutList.do#none)
팩스신청	☎ 043-877-6767
그 밖의 방법	한국소비자원 본원 및 서울지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
피해구제 절차도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등을 통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사건이 종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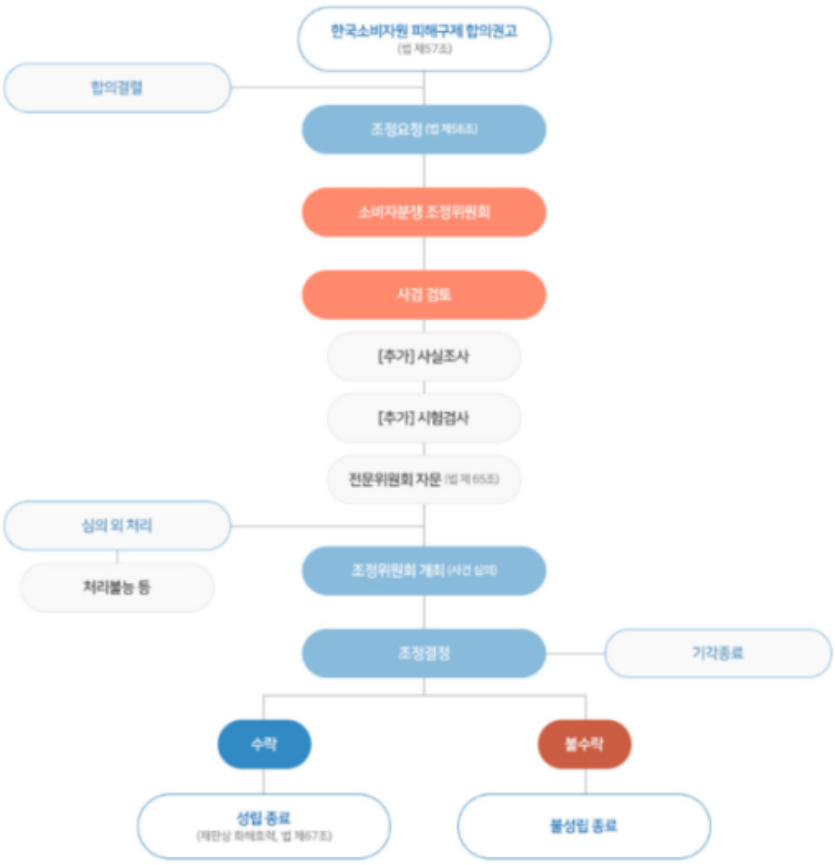
▪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분쟁조정

▪ 소비자 분쟁조정은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을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으로서,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별도의 비용없이 합리적으로 소비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분쟁조정 절차도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조정결정이 내려진 경우, 양 당사자는 최종적으로 내린 조정 결정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조정은 성립되며, 이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식품 관련 분쟁조정 결정 사례<**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분쟁조정-분쟁해결 결정사례-식품 **참조>**

이물 혼입으로 손상된 치아 치료비 배상 요구한 사건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11. 20. 피신청인이 제조한 스파게티를 4,980원에 구입하여 같은 해 12. 25. 조리하여 먹던 중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어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절함.

(판단) 스파게티 소스 제조과정에서 이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여 이물질이 일부 혼입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스파게티를 먹던 중 이물에 의해 신청인의 치아가 파절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신청인의 이 사건 파절된 치아가 사고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동 치아가 2002년도에 충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손해의 80%로 제한함이 적정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경비를 포함한 치료비 676,200원의 80%에 해당하는 540,960원을 지급하고 스파게티 정상 제품을 교환해 주며,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2. 11. 2.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2.3. 소송을 통한 해결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민사소송의 제기

▪ 부정·불량식품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부정·불량식품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 부정·불량식품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 가해행위가 위법한 행위일 것
-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 손해가 발생할 것

민사소송의 효력

▪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08조).

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단체소송의 제기

▪ 제품 구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비영리단체가 개별 소비자를 대신해서 법원에 그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70조).

▪ 소비자단체소송은 피해 구제를 직접 받아내는 '집단소송제'와 달리, 판결 효력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기업의 위법행위 금지에만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안전 위협제품이나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해 판매금지나 내용수정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소비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 개개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비자단체소송의 효력

▪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08조).

▪ 법원이 소비자단체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단체 등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75조).

-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기관에 의해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난 경우
-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 그 밖에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의 종류나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의 <법원을 통해 해결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